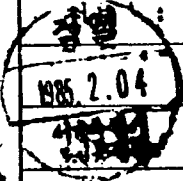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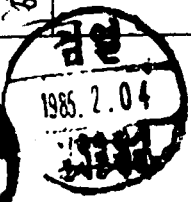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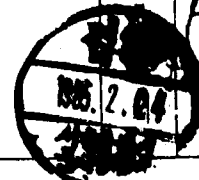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금수 445-46	(전화번호 323)	전국 규정	조항 전결사항
처리기간	0184			
시생일자	85. 1.			
보존연한	2.3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법무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지도과장
상하수국장	건설관리국장	업무계장	배수계장	건축지도과장
금수과장	민방위국장	조수방지계장		
기안백임사	조광치	85. 1.		
경유 수신 참조	기안참조			
세부	금수공사 정액공사비 및 저수조 설치기준 조정			
(제1안)	85. 2. 4 고시제 65			
수신	내부결재			
제목	같은건			
	1. 감사 142-857 (84. 11. 13) 및 감사 142-2 (85. 1. 4)호와			
	관련입니다.			
	2. 금수공사 신청에 따른 수요가 부담 정액공사비와 신규 건축			
	허가시 반영하고 있는 일반주택의 비상저수조 설치 기준을 적용 운영함에			
	있어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별첨과 같이 금수			
	공사의 정액공사비와 저수조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개선 시행			
	코저 하오니 결재를 바랍니다.			
참별	1. 금수공사 정액공사비 및 저수조 설치기준 조정안 1부			
1985. 2. 04	2. 금수공사 사무취급 요령중 개정요령 공고안 1부			
	3. 금수공사 정액공사비 고시안 1부. 끝.			
(제2안)	-1772			

원안내부결재인사취급과

기안내부결재 46호에 편찬함



수신 : 감사담당관 - 87	발신 : 금수과장
제목 : 감사원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 결과 통보	
1. 감사 142-857 (84. 11. 13) 및 감사 142-2 (85. 1. 4)호와 관련입니다.	
2. 감사원 감사시 지적처분 요구된 아래사항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개선 시행키로 하였기 통보 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 있으시기 바랍 니다.	
= 아 래 =	
가. 비상저수조 설치기준 합리적 조정	
나. 금수공사 정액공사비의 합리적 조정 고시	
첨부 : 1. 금수공사 정액공사비 조정안 1부	
2. 비상저수조 설치기준 조정안 1부. 끝.	
(제3안) 1985. 2. 04	
수신 : 공보관 - 86	발신 : 금수과장
제목 : 시보 게재 의뢰	
1. 금수공사의 정액공사비를 조정하고 금수공사 사무취급 요령을 개정하여 시행키로 하였기 별첨과 같이 시보 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금수공사 정액공사비 조정 고시안 1부	
2. 금수공사 사무취급요령중 개정요령 공고안 1부. 끝.	
(제4안) 1985. 2. 04	
수신 : 건축과 - 86	발신 : 금수과장
제목 : 비상저수조 설치기준 완화 조정	

1. 신규 건축허가시 반영하고 있는 비상저수조 설치기준을 벌침과	
같이 완화 조정 시행키로 하였기 통보하오니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 이행을 조지하시기 바라며	
2.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관련부서와 기타 유관기관 (주택행정과,	
주택기획과, 재개발과, 구청 건축과, 구청 주택과, 주택공사, 건축사협회등)	
에 통보하여 저수조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조지 바랍니다.	
첨부 : 비상저수조 설치기준 조정안 1부. 끝.	
	
(제5안)	
수신 : 수신과장조	
참조 : 수도공사과장	
	
제목 :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및 저수조 설치기준 조정	
1.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수요가 부담 정액공사비와 신규 건축	
허가시 반영하고 있는 일반주택의 비상저수조 설치기준을 적용 운영함에 있어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벌침과 같이 급수공사의	
정액공사비와 저수조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개선시행키로 하였기	
통보하오니 이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	
2. 저수조 설치기준 완화 조정안은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저수조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첨부 : 1.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조정안 1부	
2. 비상저수조 설치기준 조정안 1부. 끝.	
수신처 : 서구1-17.	
- 1774	

1985. 1.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및 저수조 설치기준 조정

=====



상 하 수 국

1775

= 금수공사 정액 공사비 및 저수조 설치기준 조정

요

지

0. 시장지시사항 (84. 12. 상수도 금수실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 공사비 과다로 금수신청기피
(조사대상 미금수 162가구의 38.3%)
 - 영세민 금수공사 비용부담 경감 방안 강구
0. 감사원 지적 합리적 개선요구
 - 포장도로 굴착복구를 수반하지 않는 비포장도로 지역도 정액
공사비에 포함된 도로복구비 부담사액 개선 시정
(변두리, 고지대등 영세민 거주지역 거의 비포장도로)
 - 비상저수조 설치기준을 현실여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재조정
0. 개선내용
 - 정액공사비 재조정고시 (포장도로 굴착복구 여부 구분)
 - 기존수전의 구경확대 공사시 증가대상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정액공사비 산정부과
 - 비상저수조 설치기준 완화 조정 (일반주택)

금수공사의 정액공사비 조정

1. 관련근거

- 0. 금수조례 제8조, 제9조, 제10조
- 0. 정액공사비 조정고시
 - 세대당 또는 건축 단위 면적당 일정한 금액
- 0. 정액공사비 산출방법
 - 계획 금수지역내의 간선배관 및 수요가 인입금수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도로복구비, 양수기대금, 일반행정관리비, 수수료 등의 합계액

2. 시행 정액공사비

- 0. 고시
 - (제290호 (81. 8. 10)
 - 제112호 (83. 2. 25)
- 0. 정액공사비 (고시금액)
 - 연건축면적 165㎡ 미만 : 290,000원
 - 연건축면적 165㎡ 이상 : 1㎡ 당 1,800원

0. 정액공사비 산출 기초

구 분	산 출 금 액	비 고
계	290,000원	1979년도에 시행된 금수공사의 실제 소요공사비를 근거로 전문원가 조사기관인 산경회계법인에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된 평균 금액임.
간 선 공 사 비	72,764 "	
전용급수장치비	143,856 "	
도 로 복 구 비	62,860 "	
일반행정관리비, 기타	10,520 "	

* 165㎡ 이상건물 : 290,000원 ÷ 165㎡ = 1,800원/㎡

3. 문제점

- 0. 포장도로의 굴착복구 이부에 불구하고 정액공사비 부족
- 0. 포장도로 굴착복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비포장도로 지역도 정액공사비에 포함된 도로복구비 부담하는 불합리 요인 발생
- 0. 변두리, 고지대등 영세민의 공사비 부담과중으로 급수신청 기피
- 0. 기존수전을 설치 급수하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맞는 급수관 및 양수기의 구강복여공사시 정액공사비 이중부담 사례 발생
- 0. 감사원 감사시 지적 합리적 개선 요구

4. 개선대책

가. 정액공사비 재조정 고시

- 0. 급수공사시 포장도로의 굴착복구를 수반하는 지역과 수반하지 않는 지역으로 대별하여 정액공사비 구분 조정

0. 조정정액 공사비

구 분	정 액 공 사 비	
	포장도로지역	비포장도로지역
연건축면적 165㎡ 미만	290,000원	227,200원
" 165㎡ 이상	1㎡당 1,800원	1㎡당 1,400원

나. 기존수전의 구경 확대공사시 증가대상 건축면적의 기준으로 공사비 산정부과

0. 기존수도전을 설치 금수하고있는 건축물(신축 또는 증·개축 등의 사유로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맞는 급수관(양수기포함) 구경 확대공사시 기존건물 면적을 공제한 증가대상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정액공사비 산정부과

0. 증가대상 건축면적이 165㎡ 미만인 경우 또는 건축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의 급수관(양수기포함) 구경 확대공사시는 실제로 소요되는 공사비 산정부과

0. 급수공사 사무취급 요령 개정
제장 제한 바로

= 정액공사비 산출 기초 (재조정내역) =

구 분	산 출 금 액		비 고
	포장도보지역	비포장도보지역	
계	290,000원	227,200원	
간선공사비	72,800	72,800	
전용급수장치비	143,900	143,900	
도로복구비	62,800	-	
일반행정관리비, 기하	10,500	10,500	

비상저수조 설치기준 완화 조정


1. 관련 근거

- 0. 시장 지시사항 제46호 (78. 5. 8)
 - 비상용 수도물 적정량 확보방안 검토하여 건축행정에 반영
- 0. 시장방침 제1496호 (78. 5. 17) 및 제0664호 (83. 3. 18)
 - 신규 건축이가시 비상용 저수조 설치 의무화
 - 기존주택은 저수조 설치 권장

2. 현행 일반주택의 저수조 설치기준

- 0. 건평 85㎡ 미만 : 1.0㎡ 이상
- 0. 건평 85㎡ 이상 : 건평 1㎡ 당 15ℓ 이상

3. 문제점

- 0. 저수조 설치기준 용량 과다로 민원야기
- 0. 건축주의 비용부담 과중으로 저수조 설치 기피
(미설치 또는 시설미비, 용량 부족등)
- 0. 소규모 연립주택의 지하저수조의 관리상해 및 시설미비로 미활용
방치사례 발생
- 0. 감사원 감사시 지적 합리적 개선요구 
 - 저수조 설치기준을 현실여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민원이 없도록 대책마련
 - 일정규모 미만의 주택은 저수조 설치대상에서 제외
 - 저수조 설치의무가 없는 기존건물에 대하여는 급수공사 승인등

4. 개선 대책

가. 일반주택의 저수조 설치기준 완화 조정

시 설 규모	구 분	저수조 설치용량			비고	
		현 행	완 화 조 정 안			
			1안	2안		3안
건평85㎡이하	1.0㎥이상	0.5㎥이상	원안	원안 바탕으로 지속 시행이됨		
건평85㎡이상	건평1㎡당 15ℓ 이상	건평1㎡당 15ℓ 이상	건평 1㎡당 15ℓ 이상	최소 또는 이하 수 개발시 권장		

- * 1안 — 저수조 용량유 축소 조정
- 2안 — 건축면적 협소한 소규모주택 저수조 설치권장
- 3안 — 단전, 단수등 비상시 용수 확보 대비

0. 제 안 채택

0. 신규 건축 허가시 반영

- 기존 건물은 저수조 설치권장

0. 급수공사 사무취급 요령 개정 (제4장 제5항 나호)

나. 개별 난방식등 소규모 연립주택의 지하저수조 설치 지양

0. 옥상 또는 옥상보다 높은 위치에 저수조 설치 허용

- 자연유하로 간 세대에 상수 급수

0. 연립주택 건설사면 입지상의 또는 건축심의회 반영

- * 급수 445-126 (84. 4. 14)호로 지침 매년 관공에 기해 전달

14부 5117 /

HIS		서
-----	--	---

서울특별시예규 제

서울특별시 급수공사 사무취급 요령중 개정 요령

서울특별시 급수공사 사무취급 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제1항 바호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존 수도전부 개량, 수선, 준개량의 공

다만, 기존 건물면적은 제외한 증축 연면적이 165㎡ 이상인 건물의

급수관 (양수기도함) 구경확대공사는 증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정액

공사비를 산정 부과한다.

제4장 제5항 나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비상용 저수조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 0. 주택 (85㎡ 미만) : "1㎡ 이상"을 "
- (85㎡ 이상 : "1㎡ 당15㎡"을 "

로)
 (로)

부 칙

이 요령은 1985. 2. 20 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장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187 511 28
 [Handwritten box with illegible text]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및 실시 지역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8조 내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정액공사비와 정액급수공사 실시 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5.

서울특별시 장 영 보 현

1. 실시 일시: 1985년 2월 14일 승인 본부에서 시행
2. 실시 지역 : 서울특별시 급수 가능 지역 전역
 (단,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 제외)
3. 대 상 : 급수를 신청하는 건축물
4. 정액공사비 내용

구 분	정 액 공 사 비	
	포장도로굴착복구 지역	비포장 도로 지역
연건축면적 165㎡ 미만	290,000원	227,200원
연건축면적 165㎡ 이상	1㎡ 당 1,800원	1㎡ 당 1,400원

- 실제 공사비가 정액공사비의 150% 이상 초과될시에는 당시 급수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초과 소요비용을 정액공사비에 가산 징수함.
- 시설본담금은 별도로 가산됨.

5. 특 정 지 역

0. 급수공 시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율·수요기에서 특별히 부담하여야 할 지역은 다음과 같다.

- 종로구 평창단지 및 주변표고 125m 이상지역
- 구로구 시흥동 3번지 법원단지 일대

0. 도면은 관할구청 수도공사과에 비치

6. 공사비 납부방법

0. 공사비는 급수신청후 납입고지서에 의거 공사 시행전에 납부 하여야 함.

